

## 1. 개 요

(1) 개정사항 요약 : 자기주식 소각의무 도입 및 자기주식 처분 규정 강화

(2) 시행일 : 2026년 3월 6일

(3) 개정 취지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한 일반 주주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개정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341조의4 신설).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제342조).

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 없이 이사회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제343조제1항 단서 신설).

마.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함(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신설).

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35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사.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되,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함(부칙 제2조).

3. 신구조문비교표(제382조의3)

※ 기출마스터법전 법조문은 아래의 표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개정 전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p>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li> <li>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li> <li>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li> </ol>	<p>5. 예정된 처분 시기</p> <p>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li> <li>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li> <li>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li> </ol> <p>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가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lt;신설&gt;</p>	<p>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lt;신설&gt;</p>	<p>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p>
<p>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p>	<p>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p>

개정 전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p>외국회사의 대표자, 감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16. (생략)</p> <p>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p> <p>18. ~ 32.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8.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④ (생략)</p>	<p>외국회사의 대표자, 감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16.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8. ~ 3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p> <p>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p> <p>④ (현행과 같음)</p>

4. 개정 관련 강의노트(2025출간) 수정사항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잘라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1) 36페이지 '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 규 제 (변동 없음)

(2) 취 득

실제취득	<p>① 의사결정 : <b>이사회 결의</b>로 취득 실행</p> <p>② 경영판단 : 이사회는 <b>해당 영업연도의</b>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공제금액(\$462①)의 합계액에 <b>미치지 못할 우려</b>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b>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b>(\$341③).</p>
이사의 책임	<p>① 요 건 : <b>해당 영업연도의</b>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b>미치지 못함</b>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b>이사는 회사</b>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b>배상할 책임</b>이 있다 (\$341④본문).</p> <p>② 입증책임 : <b>이사</b>가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b>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b>한 경우에는 <b>책임이 없다</b>(\$341④단서).</p>
위반시	<p>상법 규정을 <b>위반</b>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b>무효</b>이다(대판2001다44109, 무효설). 이사 등의 <b>손해배상책임</b>도 인정될 수 있다.</p>

(3) 예외적 취득 (변동 없음)

(4) 소각(원칙)

기 한	① 기 한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b>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b> 하여야 한다(§341의4①). ② [상]신탁에 의한 취득 :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b>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b> 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 §542의16②).
절 차	주식은 <b>자본금 감소</b> 에 관한 규정(§438, 439)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b>자기주식</b> 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b>이사회</b> 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즉, 자본금 감소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43①).

(5) 보유 또는 처분(예 외)

- ① 요 건 : 보유처분 가능 **사유** + 보유처분**계획 승인**
- ② 사 유
  -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2.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4. 회사가 **주식교환 및 합병 대가로 제공**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③ 계획의 작성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341의3④).
  -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4. 예정된 **보유 기간 또는 처분 시기**
- ④ 계획의 승인 :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341의3②).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341의3③).

⑤ 처분의 실행

주주 처분 (원 칙)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b>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b> 하게 하여야 한다(§342①).
제3자 처분 (예 외)	<p>① 사유 : <b>보유 또는 처분사유 제2호~제5호</b>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small>일직원 보살, 우의사주제도, 주식교환 및 합병대가, 정관+경영상목적</small> <b>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b>할 수 있다(§342②).</p> <p>② 의사결정 :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에 관한 결정사항은 <b>정관</b>에 규정이 없는 것은 <b>이사회</b>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b>정관으로 주주총회</b>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42③).</p> <p>※ 제3자 처분시 결정사항(§342③)</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li> <li>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li> <li>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li> </ol>
준용규정	<b>신주발행에 관한 규정</b> (§417 ~ 419, §421, §422, §423②, ③, §424, §424의2, §427 ~ 432)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b>준용한다</b> (§342④).

(6) 금지사항

권리행사금지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369), 신주인수권(§418), 무상주를 발행받을 권리(§461②) 및 배당을 받을 권리(§462 ~ 462의4) 등 <b>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b> (§341의3①).
담보제공금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b>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b> (§341의3③). <small>타인에게 담보로 제공</small>
[상신탁회사의 처분제한	<p>① 처분금지 : <b>상장회사</b>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b>처분할 수 없다</b>(§542의16①전단).</p> <p>② 반환의무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b>지체 없이</b> 회사에 자기주식을 <b>반환</b>하여야 한다(§542의16①후단).</p>

(2) 156페이지 상단 ‘(3) 질권자의 물상대위권’ 부분을 교체

(3) 기타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금지	회사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b>자신이 보유하는</b> 합병으로 <b>소멸되는 회사의 주식</b> (포합주식)과 합병으로 <b>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b> 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b>아니 된다</b> (§529의2).
물상대위권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b>제공되는 주식이나 금전, 그 밖의 재산</b> 에 대하여 질권자는 <b>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b> 할 수 있다(§530④-§339).
준비금 승계	합병의 경우 <b>소멸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b> 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 후 <b>존속</b> 되거나 새로 <b>설립</b> 되는 회사가 <b>승계할 수 있다</b> (§459②).

(3) 161페이지 하단

**2. 분할 및 분할합병대가**(§530의5, 530의6)

단순분할	신주, 차커주식,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	
분할합병	흡수분할합병	① 주 식 : 신주, 자기주식 ② 교부금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 ③ 삼각분할합병 :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도록 정할 수 있다.
	신설분할합병	단순분할과 동일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530의13).	
준비금의 승계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459②).	

**5. 개정 관련 객관식(2025출간) 수정사항**

수정사항 위치	수정前	수정後
59p 03번 (4)해설	×, 2011년 개정 전에는 '지체 없이 실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기한에도 제한이 없다.(CPA 16) 또한 처분의 대상도 규정된 것이 없다.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341의3①).
59p 03번 (5)해설	○,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CPA 20, 22, 23, CTA 15, 17, 20) 이러한 주식처분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기존 주주에게 그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CPA 16) 우호적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판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5카합80597, 삼성물산 합병사건)	×, 회사가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처분계획에 따라 보유 및 처분을 정할 수 있다(§341의3② ~ ④).  정답 ④, ⑤
215p 문제 18, 19	18 회사는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자기주식 포함)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CTA 21)  19 회사는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자기주식 포함)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CTA 21)	18 회사는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자기주식 제외)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CTA 21)  19 회사는 회사가 그 소유의 주식(자기주식 제외)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CTA 21)  ※ 주 : 아직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341의3②에 따라 수정 필요